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48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천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D의 지분 전부(2분의 1)에 관하여 2018.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D의 지분 전부(2분의 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1. 8. 접수 제1028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 (1) 소외 D은 2017. 11. 20.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0.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F 주식회사가 2018. 12. 6. 위 E의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 (2) 소외 F는 D을 상대로 대출금 1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974470 판결).
- (3) 원고는 소외 F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를 양수하였고 2022. 2. 5. 그 사실이 D에게 통지되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1) D과 피고는 1998. 6. 5.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가 2018. 6. 21.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8. 7. 27. 협의이혼 신고를 마쳐 이혼하였다
- (2) D과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10.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씩을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이후 D은 2018. 1.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D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D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D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7. 27.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8. 자신 명의의 지분까지 피고에게 이전하고 2018. 1. 22. 전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D은 1998. 6. 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7. 27. 이혼신고를 할 때까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고, 혼인기간 중인 2010.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D이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 당시 D의 재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경에는 115,000,000원~120,000,000원 정도였으므로 그 중 1/2 지분의 가액은 57,500,000원 내지 60,000,000원 상당이다. 또한 D은 시가 2013년식 스포티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는 10,000,000원(원고 주장) 내지 15,000,000원(피고 주장)으로 추정된다. 또한 D은 보통예금 계좌에 27,007,985원, G조합여수지부에 대한 퇴직금 167,873,01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사해행위 당시 H은행 7,893,000원, I에 대한 채무 70,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2,5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채무가 피고와의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D과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D의 적극재산은 최소 204,880,995원에 이른다) 적극재산으로 적어도 262,380,995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③ 한편 피고와 D이 이혼한 데에는 D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과 예금 6,494,223원, 적금 40,000,000원

등 총 98,994,223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④ 피고와 D이 이혼한 데에는 D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목적 이외에 D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이 원고에게 57,500,000원 내지 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민법 제839조의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